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. 4. 20 선고 2020가단5985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1. 4. 6.

판결 선고 2021. 4. 20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0. 10. 19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. 10. 29. 접수 제50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수정

별지